

부속서 II  
호주의 유보목록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7.4조)  
이행요건(제11.9조)  
현지주재(제7.5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는 자연인의 주재, 또는 제10장(자연인의 이동) 규정에 따른 이민, 입국 혹은 일시 체류를 포함하는 그 밖의 자연인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p>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시장접근(제7.4조)  이행요건(제11.9조)  현지주재(제7.5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호주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상업적 혹은 산업적 사업의 매입, 설립, 혹은 운영과 관련하여 원주민 혹은 원주민 단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원주민 혹은 원주민 단체의 우대를 규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호주는 투자와 관련하여 원주민 또는 원주민 단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원주민 또는 원주민 단체의 우대를 규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이 유보내용의 목적상, 원주민이란 호주 원주민 종족의 사람 혹은 토러스 해협 제도 원주민의 후손을 말한다.</p>
기존의 조치	<p>다음을 포함하는 모든 정부 수준의 법령 및 장관성명</p> <p>호주의 외국인 투자 정책  1993년 원주민권리법(연방)  1976년 원주민 토지권리(노던준주)법(연방)  1983년 원주민 토지권리법(뉴사우스웨일즈)  1994년 원주민권리(뉴사우스웨일즈)법(뉴사우스웨일즈)  1991년 원주민 토지법(퀸즐랜드)  1991년 토러스해협제도 토지법(퀸즐랜드)  1994년 원주민권리(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84년 마랄링가 차루차 토지권리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81년 아난구 피찬차차라  얀쿠니차차라토지권리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2010년 아난구 피찬차차라 얀쿠니차차라 토지권리규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2003년 피찬차차라 토지권리규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아난구 피찬차차라 얀쿠니차차라 토지 및 마랄링가 차루차 토지를 운영하는 법정 기구  1971년 광업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95년 오팔광업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p>

1995년 원주민 토지법 (태즈매니아)  
2010년 원주민정착법 (빅토리아)

분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투자

호주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집단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 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호주는 세계무역기구 도하 개발 어젠다 협상에서 나온 2005년 5월 31일자 호주 개정서비스 제안(WTO 문서 - TN/S/O/AUS/Rev.1)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정부 수준의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유보내용	<p><u>투자</u></p> <p>호주는 개발된 비거주 상업부동산을 제외한 호주의 도심지역<sup>1</sup>에 투자한다는 외국인<sup>2</sup>과 외국정부투자자의 제안(임대, 용자 및 이익공유 약정, 그리고 도심지역 기업 및 신탁의 지분 취득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p>호주의 외국인 투자 정책. 여기에는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연방), 1989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규정(연방), 1998년 금융분야(주식보유)법(연방) 및 장관성명이 포함된다.</p> <p>2012년 경제개발법(퀸즐랜드) 2009년 지속가능한 계획법(퀸즐랜드) 1997년 리조트개발 통합법(퀸즐랜드) 1992년 복합개발법(퀸즐랜드) 1995년 생추어리 코브 리조트법(퀸즐랜드) 1993년 타운스빌 시의회(더글라스 토지 개발)법(퀸즐랜드)</p>

---

<sup>1</sup> “호주 도심지역”이란 용어는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에 기재된 의미를 갖는다.

<sup>2</sup> “외국인”이란 용어는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에 기재된 의미를 갖는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u>투자</u>  호주는 호주에 투자한다는 외국인 <sup>3</sup> 과 외국정부 투자자의 제안에 대하여 그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호주의 외국인 투자 정책. 여기에는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연방), 1989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규정(연방), 1998년 금융분야(주식보유)법(연방) 및 장관성명이 포함된다.

---

<sup>3</sup> “외국인” 이란 용어는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에 기재된 의미를 갖는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u>투자</u>  호주는 외국인 <sup>4</sup> 이 호주달러 1천 5백만 달러 이상을 호주 농경지에 투자하고 호주달러 5천 3백만 달러 이상을 호주 기업식 영농에 투자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심사를 허용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호주의 외국인 투자 정책. 여기에는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FATA), 1989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규정(연방), 1998년 금융분야(주식보유)법(연방) 및 장관성명이 포함된다.

---

<sup>4</sup> “외국인” 이란 용어는 1975년 외국인 취득 및 인수법에 기재된 의미를 갖는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시장접근(제7.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는 다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이 협정의 발효 시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민간 분야로 이양, 그리고

나. 국가 소유 단체 또는 자산의 민영화

기존의 조치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는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소득 보장 또는 보험
- 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 다. 사회 복지
- 라. 공공 교육
- 마. 공공 훈련
- 바. 공익사업
- 사. 대중교통
- 아. 공공주택
- 자. 보건 그리고
- 차. 보육

기존의 조치

분야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sup>5</sup> 광고 서비스 라이브 공연 <sup>6</sup>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 <sup>7</sup> (제7.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sup>8</sup> 이행요건(제11.9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호주는 다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공중파 상업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에 대한 지역 콘텐츠 전송 쿼터
  - 나. 유료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에 대하여 호주 제작물에 적용되는 비차별적 지출 요건
  - 다. 공중파 라디오 방송 서비스에 대한 지역 콘텐츠 전송 쿼터
  - 라. 호주의 시청각 콘텐츠를 호주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그 밖의 시청각 서비스<sup>9</sup>
  - 마. 방송서비스의 스펙트럼 운영 및 허가<sup>10</sup>, 그리고
  - 바. 호주 문화 활동 투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
- 이 유보항목은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1992년 방송서비스법(연방) 1992년 무선통신법(연방)
--------	-------------------------------------

<sup>5</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방송공사와 특수방송서비스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가호부터 바호까지에 따른 조치들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sup>6</sup> 바호에만 적용된다.

<sup>7</sup> 뉴질랜드 프로그램이나 제작물의 지역콘텐츠 대우에만 적용된다.

<sup>8</sup> 라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 허가와 마호에만 적용된다.

<sup>9</sup> 그러한 조치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호주의 약속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이행될 것이다.

<sup>10</sup> 마호에 대하여, 호주의 유보는 시장접근과 현지주재 의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1936년 소득세 과세법(연방)  
1997년 소득세 과세법(연방)  
2008년 호주영화법(연방)  
2005년 방송서비스(호주 콘텐츠) 표준  
2009년 아동용 텔레비전 표준  
텔레비전 프로그램 표준 23 - 광고의 호주 콘텐츠  
상업라디오 실무규범 및 지침  
지역방송 실무규범

분야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는 국제공동제작프로그램에 따라 시청각 제작물을 위한 공동제작특혜약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그러한 약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기존의 조치 국제공동제작프로그램

분야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sup>11</sup>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 7.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는 창조적 예술품,<sup>12</sup> 문화재<sup>13</sup> 및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를 포함하는 그 밖의 문화산업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sup>1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는 시청각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sup>12</sup> “창조적 예술품”은 공연예술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실황 연극, 무용 및 음악을 포함함), 시각 예술 및 공예, 문학, 토착전통관습 및 현대적 문화표현물, 그리고 개별 예술형식 분류의 초월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혼성예술 작업을 포함한다.

<sup>13</sup> “문화재”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아카이브 및 그 밖의 문화유산수집기관이 문서화하고 보존하고 전시하는 수집품을 포함하는 민족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동산문화재 혹은 부동산문화재를 포함한다.

분야                    교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는 초등교육 및 공교육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분야                    교육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내국민 대우(제11.3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는 상업적 주재를 통한 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분야 유통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호주는 담배, 주류 또는 총포의 도소매업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분야	도박 및 베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호주는 도박 및 베팅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다음에 포함하는 법령 및 장관성명 :  2001년 인터랙티브 도박법(연방) 1999년 도박 및 경주 규제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2009년 불법 도박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2001년 경주 및 스포츠 경주권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1964년 베팅(액트탭 리미티드) 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1999년 경주법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2006년 카지노 규제법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2004년 도박기계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1998년 인터랙티브 도박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1964년 복권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1964년 풀베팅법(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1992년 카지노 규제법(뉴사우스웨일즈) 2001년 도박기계법(뉴사우스웨일즈) 1996년 공공복권법(뉴사우스웨일즈) 1901년 복권 및 추첨법(뉴사우스웨일즈) 1998년 경주관리법 (뉴사우스웨일즈) 2009년 그레이하운드 경주법(뉴사우스웨일즈) 2009년 마구경주법 (뉴사우스웨일즈) 1996년 순종경주법(뉴사우스웨일즈) 1987년 토털라이제이터법(뉴사우스웨일즈) 1998년 불법도박법(뉴사우스웨일즈) 도박규제법(노던준주) 도박기계법(노던준주) 경주 및 베팅법(노던준주) 토털라이저 허가 및 규제법(노던준주) 축구 미식축구 당구법 (노던준주) 1999년 탭 퀸즐랜드 리미티드 민영화법(퀸즐랜드) 1982년 카지노 규제법(퀸즐랜드) 1983년 주피터스 카지노 계약법(퀸즐랜드)

1992년 브리즈번 카지노 계약법(퀸즐랜드)  
1984년 브레이크워터 아일랜드 카지노 계약법(퀸즐랜드)  
1997년 복권법(퀸즐랜드)  
1993년 케언즈 카지노 계약법(퀸즐랜드)  
1999년 자선·비영리 게임법(퀸즐랜드)  
1996년 키노법(퀸즐랜드)  
1998년 웨이저법(퀸즐랜드)  
1991년 게임기계법(퀸즐랜드)  
2002년 경주법(퀸즐랜드)  
1997년 카지노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36년 복권 및 도박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95년 독립도박당국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92년 도박기계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66년 주복권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2000년 경주(독점사업허가)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2000년 허가에 의한 베팅운영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2000년 탭(처분)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993년 도박규제법(태즈매니아)  
1993년 티티라인 도박법(태즈매니아)  
2003년 도박규제법(빅토리아)  
1958년 경주법(빅토리아)  
1991년 카지노 규제법(빅토리아)  
1993년 카지노 관리법(빅토리아)  
1985년 카지노(버스우드 아일랜드) 계약법(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2003년 경주 및 웨이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법(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1987년 도박 및 웨이저 위원회법(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1954년 베팅규제법(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1984년 카지노규제법(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1990년 복권위원회법(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분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u>투자</u>  호주는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계약, 질병 및 병원 혜택, 의료 및 치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주 헌법(제51조 제23 A 호)에 따라 입법화된 조치들을 포함하는 아래 명시된 법령 또는 대체 법령  1991년 호주 청각서비스 기관법(연방), 제8항4호부터 제8항8호까지 포함 1987년 호주 의료복지기관법(연방) 2010년 호주 예방보건국가기관법(연방) 2008년 호주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당국법(연방) 1998년 호주 방사능 보호 및 핵안전법(연방) 1998년 호주 방사능보호 및 핵안전(허가료)법(연방) 2006년 호주 스포츠 도핑방지 당국법(연방) 2006년 호주 스포츠 도핑방지 당국(결과적·과도적 조향)법(연방) 1989년 호주 스포츠 위원회법(연방) 2006년 호주암협회법(연방) 1961년 연방국립혈청연구소법(연방) 2008년 치과혜택법(연방) 1981년 전염병 연구(기밀유지) 법(연방) 1991년 식품기준 호주 뉴질랜드법(연방) 2000년 유전자기술법(연방) 2000년 유전자기술(허가료)법(연방) 1995년 보건 및 기타 서비스(보상) 법(연방) 1995년 보건 및 기타 서비스(보상) 수가법(연방) 1973년 의료보험법(연방) 2012년 의료보험개정(메디케어 안전망 확대)법(연방) 2012년 의료보험개정(전문 서비스 점검)법(연방) 2000년 의료보험(허가 병리검체은행) 세금법(연방) 1997년 의료보험위원회(역할의 개혁 및 분리) 법(연방) 1991년 의료보험(병리)(수수료) 법(연방) 2009년 호주보건인력협회법(연방) 2010년 보건식별자법(연방) 1997년 청각서비스기관 운영법(연방) 1997년 청각서비스기관 및 AGHS 개혁법(연방)

1989년 공업용화학물(공시 및 평가)법(연방)  
 1997년 공업용화학물(등록료-관세)법(연방)  
 1997년 공업용화학물(등록료-소비세)법(연방)  
 1997년 공업용화학물(등록료-일반)법  
 2002년 의료실손보장법(연방)  
 2005년 의료실손보장(경쟁우위납세)법(연방)  
 2003년 의료실손보장(신중한 감독 및 제품 수준)법, 3장  
 2A절(연방)  
 2004년 의료실손보장(잔존책임 보장 지원금)법(연방)  
 2002년 의료실손보장(UMP 지원금)법(연방)  
 2002년 의료실손보장합의(재정지원-강행 연방  
 의무)(연방)  
 2010년 전문조산사 의료실손보장(연방지원)계획법(연방)  
 2010년 전문조산사 의료실손보장(잔존책임 보장  
 지원금)법(연방)  
 1967년 마약류법(연방),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9조 및 제23조와 제24항1호와 그러한 조항 상의  
 권한과 역할에 관련된 동법의 그 밖의 조항(제12조,  
 제22조 및 제24항2호 제외)  
 2003년 국가혈액당국법(연방)  
 1953년 국가보건법(연방)  
 2012년 국가보건 개정(약물혜택계획)법(연방)  
 1992년 국가보건 및 의료연구위원회 법(연방)  
 2011년 국가보건개혁법(연방)  
 2007년 국가보건보장법(연방)  
 2012년 개인관리전자의료기록법(연방)  
 2007년 민간의료보험법(연방)  
 2003년 민간의료보험(파산보험사 부담금)법(연방)  
 1995년 민간의료보험(이의부담금)법(연방)  
 2003년 민간의료보험(위원회행정부담금)법(연방)  
 2009년 민간의료보험(국가인공관절등록부담금)법(연방)  
 2007년 민간의료보험(인공기관 사용 및  
 등록수수료)법(연방)  
 2003년 민간의료보험(위험균등화부담금)법(연방)  
 2007년 민간의료보험(과도조항 및 결과적개정)법(연방)  
 2002년 생식 목적의 인간복제 금지법(연방)  
 2002년 인간 배아 관련 연구법(연방)  
 1908년 검역법(연방), 인체 검역 관련  
 1985년 검역(수수료 검증)법(연방), 인체 검역 관련  
 2011년 담배포장간소화법(연방)  
 1989년 의약품법(연방)  
 1989년 의약품(부담금)법(연방)  
 1992년 담배광고금지법(연방)  
 1947년 세계보건기구법(연방)  
 1973년 복지사업(메디케어)법(연방)  
 2006년 영국핵실험의 호주참가자(치료)법(연방)  
 1986년 퇴역군인 권리법(연방)  
 2004년 군인 원호 및 보상법(연방)

분야	보건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호주는 다음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혈액 및 그 성분의 수집, 혈장분획제제를 포함한 혈액 및 혈액 제제의 유통, 혈장 분획 서비스, 그리고 혈액 및 혈액제제와 서비스의 조달
기존의 조치	혈액자급에 관한 호주의 정책. 여기에는 2003년 국가혈액협약, 1961년 연방혈청연구소법(연방) 및 2003년 국가혈액당국법(연방)이 포함된다.

분야	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시장 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호주는 연안해상운송서비스 및 근해운송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sup>14</sup>
기존의 조치	1901년 관세법(연방) 1996년 작업장 관계법(연방) 1992년 선원 보상 및 원호법(연방) 1993년 산업보건 및 안전(해운산업)법(연방) 1981년 선박등록법(연방) 1936년 소득세평가법(연방) 2012년 연안무역(호주해운활성화)법(연방) 2012년 연안무역(호주해운활성화)(부대적 수정안 및 과도 규정)법(연방) 2012년 해운개혁(조세지원)법(연방)

---

<sup>14</sup> 이 유보의 목적상, “연안운송”이란 호주에 위치한 항구와 호주에 위치한 다른 항구 간의 여객 또는 화물 운송 및 호주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내에서 시작되고 종료되는 운항으로 정의한다. “근해운송”이란 호주에 위치한 항구와 호주 대륙붕, 호주 연안의 해저 및 그러한 해저의 하부토양 자원을 탐사하거나 이용하는 것과 연관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장소 간에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된 운송 서비스를 의미한다.

분야                   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유보내용               투자

호주는 호주 내 선박 등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분야	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유보내용	<u>투자</u>  호주는 연방임대공항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996년 공항법(연방) 1996년 공항(소유권-주식지분) 규정(연방) 1997년 공항규정(연방)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7.3조 및 제11.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호주는 시행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 협정에 따라 비당사국의 서비스 제공자 또는 투자자에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sup>15</sup>

호주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간 혹은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비당사국의 서비스 제공자 또는 투자자에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또는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기존의 조치

---

<sup>15</sup>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이는 호주-뉴질랜드 경제관계긴밀화무역협정(ANZCERTA)의 기존 또는 향후 의정서에 따라 채택하거나 유지되는 조치들을 포함한다.